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특정 조항 유예 (한글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의 제안

2020/10/02

TRIPS 이사회

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언하였고, 2020년 3월 11일에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2.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됨에 따라 팬데믹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전례 없는 혼란을 나타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¹ 우리는 수요-공급 간극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3. 이러한 글로벌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WTO 회원국은 지적재산권(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이 백신 및 의약품에 포함된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적시의 접근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의 확대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대부분의 WTO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3,722,075명이 확진 되었고 1,009,270명이 사망했습니다.² 현재까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은 팬데믹의 확산을 억제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은 증가하는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WHO의 조언에 따라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은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5.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 만이 아니라 진단 키트, 의료용 마스크,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 많은 국가가 급격한 공급 부족에 직면하였고, 전 세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제품 공급 부족은 보건의료 및 다른 필수노동자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피할 수 있는 많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회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지므로, 신속하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

¹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trip_10dec20_e.htm

²https://covid19.who.int/?gclid=Cj0KCQiAx9mABhD0ARIsAEfpavRovSjNAklwQNGx13Tva7x4Z81ESBmOfEQUDos0y2IBuiD3gxMJetAaAjG3EALw_wcB

이며, 시급합니다.

7.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진단 키트,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이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가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제품의 심각한 부족으로 다른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8. 증가하는 공급-수요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의료 제품의 국내 생산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존 의료 제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의료 제품에 대한 적시의 가용성과 구매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9. 지적재산권이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잠재적으로 방해한다는 여러 건의 보고가 있습니다.³ 또한 일부 WTO 회원국은 강제실시 및 정부사용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국의 특허법을 긴급히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특허 이외에 다른 지적재산권들도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에 따른 유연성(flexibilities) 조항을 사용할 때 제도적 및 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 제31조의2는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하며,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수입 및 수출을 위한 복잡하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1. 전 세계적인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의 방해받지 않는 세계적 공유가 필요합니다.
12.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가능한 빨리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부의 제1, 4, 5, 7절의 이행, 적용 및 시행에 대한 유예를 일반 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13. 유예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면역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유예 채택일로부터 [x]년의 초기 기간을 제안합니다.
14.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첨부된 결정문의 채택을 일반이사회에 시급히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록

결정문 초안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해,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 유예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협정")의 제9조 제1, 3, 4항을 고려하여;

³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0/world-war-ii-style-production-may-carry-legal-risks-for-patriots>

WTO 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회의 사이에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코로나19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SARS-COV-2)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임을 주목하여;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9-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으며 모든 WTO 회원국에서 계속해서 매우 높은 위험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회, 경제, 세계무역 및 여행의 심각한 붕괴,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포함하는 전례 없는 전염병의 다면적 영향을 주목하여;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 호흡기를 포함한 저렴한 의료제품에 막힘없이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통합, 연대 및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을 요구함을 인식하여;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TRIPS 협정 의무의 유예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TRIPS 협정의 제2부의 제1, 4, 5 및 7절을 시행/적용하거나 TRIPS 협정 제3부에 따라 이들 조항을 시행할 회원국의 의무는 일반이사회 결정으로부터 [x]년간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하여 유예됩니다.
2. 제1항의 유예는 TRIPS 협정 제14조에 따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결정은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최빈개도국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4. 이 유예안은 WTO 협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지 1년 이내에 일반이사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5. 회원국은 본 결정에 포함된 유예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 및 1(c)에 따라, 또는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